

지방계약법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 최 두 선



이번호에서도 지난호에 이어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규)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위 조문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상 법령상 비율은 상한이 되는 비율을 말하며 따라서 발주청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서 상한비율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발주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을 하거나 원가를 검토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나 이윤율이 상한율을 벗어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위조문은 원가계산서를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1항의 규정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원가계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가계산에 의하지 않고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들이 원가계산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원가계산기관들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가계산기관들은 동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원가계산은 설계에 의하여 가격이 산정되며 설계가격을 검토하여 최종원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제조나 용역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면 대부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하여 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관의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용역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
 -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규)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동가격은 감정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곤란한 경우 유사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견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에 대하여는 적용순서가 없이 발주청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은 적용순서가 정해져 있음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규)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위 조문 제1항의 규정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는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각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전체 원가 계산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 원재료의 경우에도 단위당가격에 세액이 계산되고 전체 공급될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에도 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원재료는 거래실례가격이므로 그 자체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법)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제11조(경쟁방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규)제22조(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9조는 경쟁입찰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의 법률적인 성질은 서로 대립하는 두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법률행위 이며 채권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할 수 있다.본법에서 정하여진 계약에 관한

규정은 사법상 계약의 원칙인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절차나 방식을 취하되, 자치단체에 가장유리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계약은 원칙적으로 널리 일반인에게 공고하여 공개경쟁에 부쳐야 하고 일정한 제한아래 지명경쟁 계약이나, 제한경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이나 지명경쟁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경쟁입찰에 의하는 비율보다 건수 대비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 분	합 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비고
		계약실적	비율	계약실적	비율	
합 계	182,102건 (15조 9,968억원)	38,245건 (12조 727억원)	21.0%	143,857건 (3조9,241억원)	79.0%	
공 사	82,177건 (12조 2,855억원)	22,092건 (10조 228억원)	12.1%	60,085건 (2조2,628억원)	33.0%	
용 역	42,354건 (2조 5,648억원)	11,315건 (1조7,014억원)	6.2%	31,039건 (8,634억원)	17.0%	
물 품	57,571건 (1조 1,465억원)	4,838건 (3,485억원)	2.7%	52,733건 (7,980억원)	29.0%	

영제 11조는 경쟁입찰의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쟁의 방법은 반드시 입찰이라는 형식을 수반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쟁에서는 가격입찰은 반드시 수반하고 있다. 입찰의 방법은 최근에는 대부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하고 있다. 영제11조 제2항은 물품이나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매방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의미이다. 규칙 제22조의 경우에도 경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입찰과 같이 경매의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100 이상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영)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영)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영12조는 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입찰에서 “유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효한 입찰”이란 입찰에 참가한자가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고 입찰무효사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입찰자가 2인인 경우 1인의 입찰자가 예정가격이하로 투찰해야하나 예정가격이상으로 투찰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은 갖추었으나 투찰은 잘못된 경우로서 그 입찰자는 유효한 입찰자로 보아 유효이 되지 않는다. 영 제 13조의 규정은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필요한 자격인 등록·인가·허가·면허 등을 갖춘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추상적인의미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입찰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려면 어느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이나 계약을 해야 할까?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발주처에서 관련개별법령의 내용을 검토하여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

제2호의 경우에는,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비밀문서를 인쇄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 소득세법의 내용을 보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또한 법인이외에 사단·재단이나 그밖에 단체의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민간단체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아닌자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할 수 있다.

위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살펴보면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인 경우 당해자치단체와 계약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계열회사, 직계존비속의 자본금이50%이상인 법인의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 ※ 단,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경우 예외(이 경우도 조합원은 자격 필요)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 또는 납세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자
- 보안 측정 등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
-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 영업정지 종인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 또는 사업행위를 일시 중지된 경우

영 제13조 제2항으로 다시 되돌아 가보자 .동 조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면허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의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경우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증명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서 자격 등에 관하여는 관할행정청에서 발행하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관할 시군구에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입찰할 시 마다 이를 일일이 제출하여 입찰을 한다면 입찰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일괄 등록하여 입찰을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 제3항이 이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동내용은 경쟁 입찰에서만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영제13조 및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3조제1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20〉

(규)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등록신청서
-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등록신청서
-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등록신청서
-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마. 인감증명서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위 규정은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들의 등록요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규정은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제4항의 규정은 지정정보처리장치(지출은 나라장터, 수입은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제5항의 규정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현재는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제6항의 규정은 발주자가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미리 공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규)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입찰자격이나 부정당업자의 제재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이는 매우포괄적인 사항으로서 발주자로서는 의무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 우선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는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경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제한한 면허나 등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규칙 제42조에 의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역제한이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규칙 제17조의 내용은 발주자가 당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에는 토목으로 등록된 자나 토목건축공사로 등록된 자로 제한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조경 공사 업 등록까지 요구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규)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규칙 제18조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지방공기업 등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입찰참가등록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 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의 경우 별도의 면허 등 자격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서의 규정에서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유무에 대한 확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대형공사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대상공사를 의미 한다 . 제2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18개 공종의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동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공사를 말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교량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 ①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의 사전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76호)
- ② 200억이상 300억원미만 18개 공종에 대한 사전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176호)

①, ② 사전심사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동내용을 합쳐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사전심사(PQ)의 배점기준부터 알아보자. 사전심사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는 경영상태, 2단계는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통과 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경영상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재무비율 평가방식과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심 사 방 법	세 부 평 가 항 목
1차 평가	재무비율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율 ⑥총자산순이익율 ⑦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대상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용평 가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중 택일)

위 평가방식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의 경우 평점 70점 이상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우
에는 회사채 BB-이상, 기업어음B0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되어야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하
여 모두 통과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통과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원전체가 통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

한편 신용평가에 의할지 재무비율에 의할지 여부는 입찰자가 선택하나 신용평가 방식으로 선
택한 경우에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중 택일해야한다.

먼저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심사기준을 살펴보자. 재무비율에 의한 방식은 입찰자의 최
근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되며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서는 이러한 경영상태의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한편 신설업체의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최초결
산서를 발행받아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영상태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20.0 17.7 15.5 13.2 11.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0 17.7 15.5 13.2 11.0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2.0 10.6 9.3 7.9 6.6
라. 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2.0 10.6 9.3 7.9 6.6
마.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9.0 8.0 7.0 6.0
바. 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6 2.3 1.9 1.6
사. 최근년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7.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아.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2)]	9)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자. 영업기간	-	8.0	30년이상 30년미만~20년이상 20년미만~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8.0 8.0 8.0 7.0 6.0

다음은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살펴보자.

신용평가에 의한 방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는 완료되어야 함)는 관련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청을 하고 증빙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용평가등급	통과여부
AAA	-	AAA	통 과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탈 락
CCC+이하	C이하	CCC+이하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

